업무방해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누설등)

·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0. 25. 2014고단9055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피고인1외3인

【검 사】황우진(기소), 최형규(공판)

【변 호 인】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

【주문】

]

피고인 1을 징역 1년에, 피고인 2, 피고인 3을 각 징역 8월에, 피고인 4 주식회사를 벌금 50,000,000원에 각 처한다. 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피고인 1, 피고인 2, 피고인 3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누설등)의점은 무죄.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]

【이유】

[이유]

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